



제300회 임시회
2011.05.16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병학 교육위원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1년 5월 3일
-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3. 제안이유

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 부터 제4조까지)
- 나.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- 다.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부터 10조까지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이 「도서관법」으로 전면 개정(2006. 12. 20)되면서 “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 - ※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(도서관운영위원회)」 부칙으로 개정(삭제)
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,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,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, 회의에 관한 사항,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,
-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(도서관 운영위원회) 제1항은 삭제하고, 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도서관운영위원회”로 바르게 정비하였음.
- 이번 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·활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도서관법(전부개정, 2006.10. 4 제8029호)

제30조 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※ 도서관법 전부개정 ⇒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, 동법시행령 폐지

□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
제 4 장 도 서 관

제9조(도서관 운영위원회) ①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임기·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

②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) ①도서관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관장이 정한 도서선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의 구성·임기·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